

## 5월4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P001469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77	7,957	1,555.56	1,555.56	19.5496	19.5496	운동시설	1/0	자연녹지지역	20.05.28		취하	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.
2	2020650000P001420	설계변경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37	6,309	1,829.58	2,840.21	28.9995	38.95	단독주택	3/		20.05.28		보류	현장확인 후 심의 진행합니다.
3	2020650000P001415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-32	661	84.44	80.76	12.7746	12.2179	단독주택	1/	생산물리지역	20.05.28		부결	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